
경제문화국

일자리경제과



(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(성립전)) (P - 2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년 5. ~ 12.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김포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80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와 미화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조모임과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제공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	27,000			27,000	
국 비						
도 비		27,000			27,000	
시 비						
기 타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 공모사업(지자체와 노동단체 간 협업)에 지원하여 선정(21.4.15.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	제5조
근거내용	제5조(지원범위) 도지사는 제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9.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, 노동자의 권익보호,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,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·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	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자체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공동주택 경비·미화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업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정책 반영,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
- 자조 모임 및 교육, 힐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제공
- 공동주택단지 모범 모델 발굴 및 모범 단지 노동자 휴게실 환경개선비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	307-02 민간경상 사업보조	·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: 27,000,000원 = 27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

- 2021.02. : 공모사업 지원(인천교구 부천 노동사목 “새날의 집”과 협업 공모)
- 2021.04. : 공모사업 선정
- 2021.05. : 성립전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지급
- 2021.05. ~ 12. : 실태조사, 자조모임, 교육, 힐링프로그램 등 지원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	
2020년	-	
2021년	○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보조금 지급 (21.6.1) - 수행기관 : 인천교구 부천 노동사목 “새날의 집” - 추진실적 : 경비미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중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-	-	
2020년	-	-	-	-	
2021년	27,000	27,000		0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일자리경제과	일자리정책팀장 최성기	담당자	행정7급 임은선	전화	2276
---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사업) (P - 2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년 4. ~ 12.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신규근로자 3,450여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	568,000			568,000	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	568,000			568,000	
기 타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함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	제17조 5항
근거내용	⑤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, 근속장려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심의	공유재산관리계획	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	민간위탁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회의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*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%를 지원
- *정부 두루누리 사업 :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)의 일부(80%)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
- **지원요건 : 월 평균보수액 22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(1개월 이상 고용유지)/종합소득 3,800만원미만/재산 6억원미만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		합 계 = 568,000	
두루누리 플러스 사업	302-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	· 사회보험료 지원 : 17,980원×3,450명×9월 = 558,000	
	201-01 사무관리비	· 일반수용비 : 1,000,000원 · 홍보물 제작 : 2,000,000원 = 3,000	
	201-02 공공운영비	· 우편제작발송 : 700원×5,000개소×2회 = 7,00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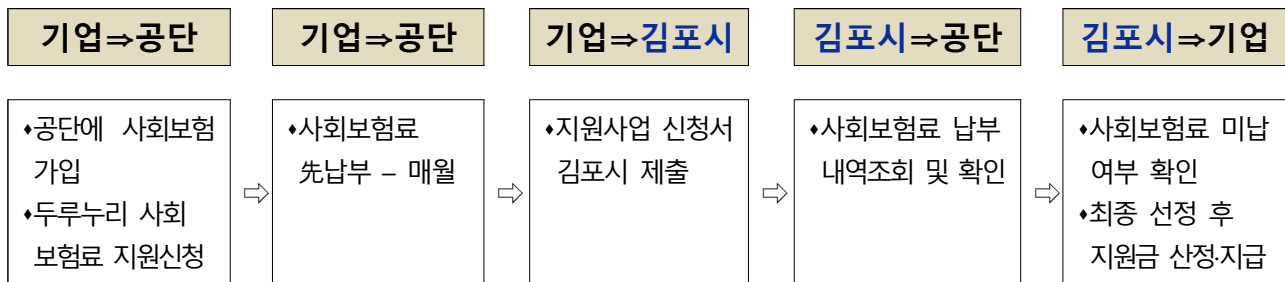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두루누리 플러스 사업

- 2020.12. : 추진계획 수립
- 2021.03. : 관련 조례 개정
- 2021.08. :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협약
- 2021.08. : 사업 접수 시스템 구축(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 시스템 이용)
- 2021.09. :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사업 신청 공고
- 2021.10. ~ 12. : 사업 신청 접수

○ 지원절차

- 보험료 사업자 선납 ⇨ 분기별 정산하여 소급 지원

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일자리경제과	일자리정책팀장 최성기	담당자	행정7급 임은선	전화	2276
---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) (P - 2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9. ~ 12. ○ 위 치 : 김포시
- 사업규모 : 미취업 청년 300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	30,000			30,000	30,000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	30,000			30,000	30,000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로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따른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 신규 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	제13조 제2항
근거내용	② 시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1항의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김포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 구직에 필요한 어학시험 및 한국사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취업역량 제고
- 어학능력 및 한국사 시험 등 9개 과목 중 실제 응시한 수수료 실비 청구 시 지역화폐로 지급
- 2021년은 하반기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으로 연1회에 한하여 시범운영
 - ※ 2022년부터 본격 운영 시 실제 응시한 시험에 한해 연2회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	302-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	응시료 : 100,000원*300명*1회 =	3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2. : 기본계획수립
- 2021.06. : 「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 /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(보건복지부)
- 2021.07. :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/ 세부추진계획수립
- 2021.08. :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 구축(경기도일자리재단 시스템 활용) 및 사업홍보
- 2021.09. ~ 11. : 사업공고 및 온라인 접수
- 2021.12. : 심사 및 지급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일자리경제과	청년정책팀장 최재욱	담당자	행정6급 김지영	전화	5888
-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	302-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· 천막 지원 250,000원*400개소 =	10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8. : 추진계획 수립 및 상인회별 세부내용 협의
- 2021. 8. ~ 9. : 계약업체 선정
- 2021. 10 ~ 11. : 사업추진(천막 제작 등) 및 물품 배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일자리경제과	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선아	담당자	행정8급 이명원	전화	2563
-----	---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소득안정지원자금(성립전)) (P - 24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4. ~ 12.
- 사업대상 : '21.1.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'21.3.1.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
- 지원내용 : 1인당 50만원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	60,500			60,500	
국 비		60,500			60,500	
도 비						
시 비						
기 타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중소벤처기업부 「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」 사업 확정 및 국비 교부 완료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소상공인법	제9조 6항
근거내용	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 6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재난지원금(새희망자금,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)이 지원되었으나, 노점상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노점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
- 영업신고·도로점용허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 한해 1인 50만원을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소득안정 지원자금	302-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소득안정지원 노점상 121개소 * 500,000원 =	60,5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4 :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공고
- 2021.04 ~ 06. :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· 접수
- 2021.06. : 국비 교부 및 성립전예산 편성
- 2021.06 ~ 12.. :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및 사업 완료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-	-	
2020년	-	-	-	-	
2021년	60,500	500		60,000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일자리경제과	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선아	담당자	행정8급 이명원	전화	2564
-----	---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김포시 지역화폐 사업) (P - 24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년 연중 ○ 위 치 : 관내
- 사업규모 : 지역화폐 일반발행액 1,020억 원(총 발행액 목표액 1,920억 → 3,000억 원 확대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8,169,120	15,424,960	4,124,960		11,300,000	7,255,840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8,169,120	15,424,960	4,124,960		11,300,000	7,255,840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 및 소비지원금 등 지역화폐 이용 확대 및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른 발행액 증가
- 2021년 김포페이 발행목표액 확대(1,920억 → 3,000억 원 수립)에 따른 할인료 및 수수료 일부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	제6조
근거내용	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, 판매(충전)·환전 수수료,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통한 지역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
- 코로나19 장기화 등 10% 인센티브 연중 실시 및 소비지원금 시행 등으로 2021년 김포페이 발행목표액 확대(1,920억 → 3,000억 원 수립)에 따른 할인료 일부 및 수수료 확대
 - ※ 시비 추가 소요분 : 114억 원 할인료 추가 소요액 중 102억 원 할인료 계상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		합 계	= 11,300,000
김포시 지역화폐 운영	201-01 사무관리비	· 일반발행 할인료(10%) 102,000,000,000원*10%	= 10,200,000
		· 발행수수료 91,666,670,000원*1.2%	= 1,100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09. : '21년 지역화폐 발행계획 수립
- 2020.09. : '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비 수요 제출
- 2021.03. : '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발행 수요 확대 제출
- 2021.06. : '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국비보조금 확정내시
- 2021.12. :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결과 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○ 김포페이 발행 및 운영 실적(12.31일 기준) - 회원수 : 65,131명 - 가맹점 : 6,758개소 - 발행액 : 32,001,938천원(정책발행 4,226,473천원 / 일반발행 27,775,465천원) - 결제액 : 28,981,268천원(발행액 대비 90.56%)	
2020년	○ 김포페이 발행 및 운영 실적 - 회원수 : 197,513명 - 가맹점 : 11,298개소 - 발행액 : 181,250,822천원(정책발행 10,644,822천원 / 일반발행 170,606,000천원) - 결제액 : 163,320,503천원(발행액 대비 90.11%)	
2021년	○ 김포페이 발행 및 운영 실적 - 회원수 : 251,055명 - 가맹점 : 12,348개소 - 발행액 : 159,372,903천원(정책발행 8,728,643천원 / 일반발행 150,644,260천원) - 결제액 : 158,807,114천원(발행액 대비 99.64%)	6.30.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2,040,086	2,003,308	820월	39,778	
2020년	8,169,120	7,536,124	627,565	5,431	
2021년	4,752,525	1,584,332		3,168,193	6.30.기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일자리경제과	지역경제팀장 박유선	담당자	행정7급 한지혜	전화	5217
-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경제문화국

세정과



(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운영)(성립전) (P - 2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6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
- 사업규모 : 연례반복사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25,000	36,000			36,000	11,000	
국 비							
도 비	25,000	36,000			36,000	11,000	
시 비							
기 타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21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에 대한 상사업비 보조금 교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경기도 지방세보조금관리조례
근거내용	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지방재정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2021년 세정운영평가 최우수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편성
- 코로나19 방역물품(마스크) 구입비로 편성하여 전공직자에게 배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코로나19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방역물품 (마스크)구입	201-01 사무관리비	· 마스크구입 : 600원*30매*2,000명 =	36,000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	
2020년	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지급, 전산장비보강, 우편료 납부, 물품구입 등	
2021년	-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-	-	
2020년	25,000	25,000	-	-	
2021년	-	-		-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세정과	세정팀장 채광수	담당자	세무7급 강우식	전화	2685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경제문화국

문화예술과



집합금지업종(노래연습장)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 (P - 26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8~9월 ○ 위 치 : 김포시
- 사업규모 : 205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및 김포시의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(2020.11.18.~11.27) 대상이었던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.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11,000	205,000	0	0	205,000	194,000
국 비						
도 비	5,500	0				-5,500
시 비	5,500	205,000	0	0	205,000	199,500
기 타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김포시 집합금지 업종(노래연습장)에 대한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 지원(신규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	제5조, 제6조
근거내용	<p>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와 교육·보육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시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도 지원대상자로 본다.</p> <p>1.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의 소상공인</p> <p>제6조(지원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제5조제1호 및 제2호, 제5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: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</p>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은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장 기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의 조치를 받아왔으며, 특히 지난해 11월 관내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 발생에 따른 김포시의 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2020.11.18.~11.27 까지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.
- 이미 도 내 타 시군에서도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미 지급되거나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김포시도 해당 업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.
- 시 자체 행정명령에 대한 영업상 손실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집합금지업종 (노래연습장) 생활·경영안정 지원금	302-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·1,000,000원*205개소 =	205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8. :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공고 및 홍보
- 2021.08. : 신청 및 접수
- 2021.09 : 지원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해당없음	
2020년	경기도 집합금지업종(코인노래연습장) 500,000원*22개소=11,000,000원 (도비50:시예비비50)	
2021년	해당없음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해당	없음		
2020년	11,000	11,000	없음	-	
2021년	-	"		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문화예술과	예술팀장 현진환	담당자	행정9급 최진하	전화	2490
-----	-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예술인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 (P - 26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8~9월 ○ 위 치 : 김포시
- 사업규모 : 약 682명(실제 지원 인원은 심사 후 확정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전시, 공연 등 활동기반의 축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 및 생활 안정에 기여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0	341,000	0	0	341,000	341,000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0	341,000	0	0	341,000	341,000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예술인에 대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(신규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	제5조, 제6조
근거내용	<p>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와 교육·보육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시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도 지원대상자로 본다.</p> <p>2. 「예술인복지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</p> <p>제6조(지원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제5조제1호 및 제2호, 제5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: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</p>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	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경상■	자본□	-	-	-	-	-	-	-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각종 전시·공연 등 활동 중단에 따른 지역 예술인들의 소득감소와 경제적 어려움 지원 필요
- 열악한 창작여건으로 인한 활동기반 침체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필요
- ※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예술인 생활·경영안정 지원금	302-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.500,000원*682명 =	341,000	실제 지원인원은 서류심사 등으로 확정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8. :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공고 및 홍보
- 2021.08. : 신청 및 접수
- 2021.09 : 지원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해당없음	
2020년	"	
2021년	"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	해 당	없 음		
2020년		"	"		
2021년		"		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문화예술과	예술팀장 현진환	담당자	행정7급 유지수	전화	2477
-----	-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경제문화국

식품위생과



(집합금지업종(유흥시설)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) (P - 27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7월 ~ 9월
- 사업규모 : 유흥시설 167개소(유흥주점 122개소, 단란주점 41개소, 콜라텍 4개소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속 된 유흥시설 영업자에게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손실 완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-	165,000	-	-	165,000	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-	165,000	-	-	165,000	165,000
기 타						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	① 제4조 ② 제5조제1호
근거내용	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코로나19의 발생·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의 소상공인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『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49조에 의거 시행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 장기간 영업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에게 경영자금 지원
 - 지원대상 : 『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)
 - 자격요건
 - 지원기준일 : '21. 5. 31. 기준 시에 영업허가 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된 유흥시설
 - 매 출 액 :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소상공인에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
 - 지원 제외대상 :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, 신청 당시 폐업신고 된 경우

○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

- 지원금액 : 1개 업소 당 1,000천원

※ 단, 4차 집합금지 기간(2021.4.12. ~ 2021.6.30.)에만 적용되어 집합금지한 경우 1개 업소 당 500천원 지급

- 지원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(코로나19 대응) 집합금지업종(유흥시설)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	302-02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	· (코로나19 대응) 집합금지업종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 1,000,000원 * 163개소 = 500,000원 * 4개소 =	163,000 2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7. : 계획수립 및 지원 공고

- 2021.08. : 신청·접수 및 서류 검토, 지원 여부 확정 후 지급

- 2021.09. : 정산 및 결과 보고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식품위생과	식품위생팀장 김효영	담당자	보건6급 김효영	전화	2232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